

남북한 직교역 전환시 청산결제제도 운용방안

- 남북한 기본합의서 이행시의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

朴 有 煥

남북지원부 심사역

I. 머리말

II. 환결제와 청산결제의 개념

III. 청산결제제도 운용사례

IV.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운용방안

요 약

지난 10년간 남북한간의 교역은 단순물자교역과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교역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역대금 결제체제의 미비로 대부분의 교역이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교류의 핵심인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남북한간의 직교역 추진을 위해서는 대금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금결제제도로 남북한이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한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 남북교역 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결제문제가 해결되어 남북교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산결제제도는 양국간의 개별교역에 대해 거래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양국의 지정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을 기장하였다가 일정기간마다 대차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청산결제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결제수단으로 통용되어 왔으며, 통독전 동서독 교역의 대금결제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동서독간의 교역은 동서독 정부간에 준국제법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경제통합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동서독간의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한 대금은 독일연방은행과 동독국가은행에 상호 개설된 청산계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다. 동서독은 청산계정을 통한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청산통화단위를 양국의 통화 대신 VE (Verrechnungs Einheit : 청산단위)라는 제3의 결제통화단위를 사용하였다. 동서독은 교역균형 유지 불능시를 대비하여 일정 신용한도액 범위를 허용하는 청산계정 대월제도 (Swing Facility)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구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이를 국가와의 교역에는 대부분 청산결제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일부 비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에도 청산결제제도를 사용하였다. 북한은 교역상대국과 체결된 무역에 대한 기본조약을 바탕으로 체결되는 무역협정과 무역의정서에 따라 교역을 추진하였으며, 대금결제는 양국이 지정한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의 청산결제은행은 조선중앙은행 또는 조선무역은행이 지정되었는데, 조선무역은행이 설립된 1959년 이후에는 조선무역은행이 주로 청산결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밀잔액의 청산은 다음해에 상품의 반출입을 조정함으로써 물자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일정한 규모의 청산계정 대월한도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남북교역에 대한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은 남북경제회담(1984~85)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남북고위급회담(1990~92)에서는 남북한이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를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중단에 따라 청산결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남북한간 교역에 청산결제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의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은 사회주의국가처럼 5년단위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하기보다는 동서독처럼 무역협정체결을 생략하고 남북한 당국이 교역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청산은행간 청산결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후 당해연도 교역의정서를 작성하여 추진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북한의 청산결제은행으로는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중에서 정부간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은행간 지불협정의 체결·집행을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청산결제은행의 선정에는 상호주의원칙뿐만 아니라 청산결제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 IMF 8조국 의무준수, 정부의 대북한 자금지원 및 결제창구의 일원화, 남북협력기금과의 연계성, 고유업무의 특성 및 지원업무와의 연계성 등 업무수행 제반여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산결제통화의 지정에 있어서는 동서독 경우처럼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들어 사용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안정성을 지닌 통화를 결제통화로 지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산계정 기밀대차의 결제는 남북한 당국이 교역균형유지를 노력할 경우 기밀청산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억년도의 일정시점을 정산기간으로 정하여 결제통화로 정산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과 지금까지의 남북교역 경험으로 볼 때 일정규모의 청산계정 대월한도제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계정 대월한도의 설정은 남북한 경제규모와 반출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교역규모 확대 추이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역규모에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남북한 교역이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직교역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직교역전환 초기단계에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형태의 교역에 대해서는 환결제방식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은 청산결제에 따른 교역추진 시 대규모 교역수지 불균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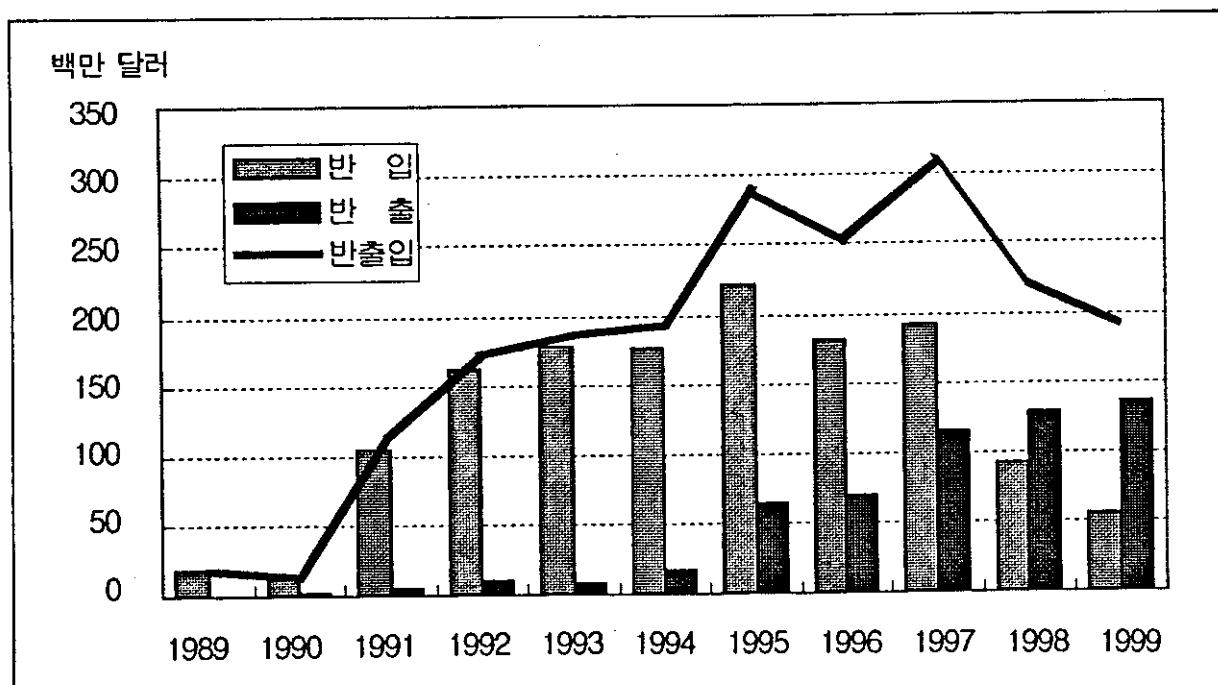
분단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한간 경제교류는 1988년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이후 단순물자교역과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10년간 남북교역은 북한 핵문제 등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소간의 부침을 거듭해 왔으나, 교역규모는 대체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남북교역 증가율이 연 평균 6.8%에 불과하여 교역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연간 2~3억 달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위탁가공교역과 비거래성 교역(KEDO 지원 중유, 경수로물자, 인도적 무상지원물자 등)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교역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¹⁾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림 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주 : 1999년은 7월까지의 실적.

자료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각호.

1) 남북교역은 1989년 교역개시 이래 1994년까지 비교적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5년 이후에는 증가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교역규모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음. 1995년 남북교역은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1994. 11)」에 따른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와 KEDO 지원 중유의 반출 개시에 따라 전년대비 47.7% 증가하였음. 그러나 1996년도 교역규모는 북한의 DMZ내에서의 도발행위 및 판문점에서의 무력시위, 잠수함 침투사건 등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 등에 따라 전년대비 12.3% 감소하였음. 1997년도 남북교역은 민간·정부의 대북지원, 경수로 물자, KEDO 지원 중유 반출 및 섬유류·기계전자제품의 위탁가공교역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2.3% 증가하였으나, 민간·정부의 대북지원, 경수로 물자, KEDO 지원 중유를 제외한 실질교역 규모는 4.6% 증가에 그쳤음. 1998년도 남북교역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외화난과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교역여건의 악화로 정부의 「제2차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1998. 4)」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로 반전되어 전년대비 28.0% 감소하였으며, 실질교역은 전년대비 42.5% 감소하였음.

있는 원인중의 하나는 남북한간의 직접협상 교역방식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결제체제의 미비로 대부분의 교역이 간접교역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직교역은 1991년 남한의 쌀과 북한의 시멘트·무연탄의 물물교환을 계기로 시작된 이래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직교역의 형태에는 남북한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방법으로는 남북한간 직접적인 L/C개설이 불가능한 상황 이기에 계약에 따라 교역대금을 제3국 은행에 입금시키는 방법과, 남북한간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교역대금은 상호 반출입액으로 상계하는 구상무역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직교역의 수행이 간접교역보다는 시간과 비용면에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으나 대금결제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직교역 추진에는 어려움과 위험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이다.²⁾

따라서 남북한간 물자교역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우선적으로 간접교역 을 직교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북한간의 직교역 추진을 위해서는 대금결제

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간접교역 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결제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교역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남북교역에 남북한이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는³⁾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형태와 운용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교역시 대금결제 방식을 크게 환결제방식과 청산결제방식으로 나누어 각 결제방식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동서독간과 북한의 청산결제제도 운용사례를 검토한 후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환결제와 청산결제의 개념

1. 환결제

환결제방식은 대표적인 무역대금 결제방식으로서 환어음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한 결제방식, 추심(collection)에 의한 결제방식,⁴⁾ 송

- 2) 직교역은 해외중개상이라는 안전편이 상실됨으로 해서 거래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교역협상은 북한의 당사자와 직접 하되 계약과 대금결제는 해외중개상을 통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3) 남북한은 199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제1조 제⑧항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를 통해 이미 합의한 바 있음.
- 4)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된 구비서류에 환어음을 발행·첨부하여 거래은행과 수입자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가 그 환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을 말함. 추심결제방식에는 수입자가 선적서류·환어음(一覽出給환어음) 영수와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s against Payment)과 환어음(一覽後定期 또는 確定日出給환어음)을 인수한 후 선적서류를 영수하고 일정기간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두 가지 방식이 있음.

금(remittance)에 의한 결제방식⁵⁾ 등이 있다.

환결제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은행간에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교역대금을 환결제 방식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은행간의 환거래계약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거래계약이란 송금, 무역거래, 자본거래 등 외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은행간에 이루어질 업무의 종류, 거래통화의 종류,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환거래계약을 맺은 상대은행을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 하며, 환거래은행은 예치환거래은행과 무예치환거래은행으로 구분된다.⁶⁾

현재 북한의 대외결제은행들은 주로 일본 및 유럽계 은행들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럽의 은행들과는

무역대금 결제와 차관 도입 및 상환을 위해서, 일본의 은행들과는 무역대금결제와 조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의 대북 송금의 편의를 위해서 환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계 은행들과는 미국의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거한 해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이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⁷⁾

남북한 은행간에 환거래계약이 체결될 경우 환결제 방식에 의한 직접 대금결제가 가능해져 제3국 은행을 경유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북한은행들은 남한은행과 환거래계약을 통해서 신용한도(credit line)를 제공받는 등⁸⁾ 단기외화자금의 조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대외결제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낮아 환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기가 어렵고, 북한의 외

-
- 5) 송금결제방식은 상품의 인도전, 인도후 또는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송금시기에 따라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사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동시결제방식(concurrent payment)으로 구분됨. 또한 지급지시방법에 따라서는 전신송금환(T/T : Telegraphic Transfer)에 의한 결제, 우편송금환(M/T : Mail Transfer)에 의한 결제, 송금수표(D/D : Demand Draft)에 의한 결제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6)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이란 상대은행과의 외환거래에 따르는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대 환거래은행에 예치금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외화자금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은행을 말함.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은 예치금계정을 개설하지 않고 송금에 관한 지급의 위탁, 환이음 추심의 위탁, 신용장의 통지 등과 같은 일 반적인 환거래관계만을 유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이 경우 동 은행과의 대차결제는 제3은행(reimbursement bank)을 통해 이루어짐.
 - 7) 미국은 1995년 2월 대북한 경제제재완화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제3국과의 국제거래 결제를 목적으로 미국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직접금융거래는 금지한 바 있음(김규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완화와 남북한 관계,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34). 한편 미국이 1999년 9월 북·미 미사일회담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일부를 추가 해제함에 따라 군사적 목적 이외의 직접금융거래가 허용되었으나, 아직까지 북한은행과 미국은행과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바는 없음.
 - 8) 예치환거래은행은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일정한도의 credit facility를 제공받는데, 이에는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 of L/C), 기한부신용장에 의한 어음의 인수 및 할인, 당좌차월(over-draft) 등이 있음. 신용한도는 통상 과거 거래실적, 향후 업무량의 전망, 은행의 대외신용도, 국가위험 등을 토대로 결정됨.

환사정상 대금결제지연 또는 불능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2. 청산결제

청산결제방식은 2국간에 이루어지는 개별 교역에 대해 거래시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양국간의 청산결제협정에 의하여 양국의 지정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을 기장하였다가, 일정기간(6개월 혹은 1년)마다 대차의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청산계정에 의한 대금결제는 양국간에 청산협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결제를 담당할 은행이 결정되면 양국간의 교역 및 그와 관련된 대금결제는 이들 두 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교역은 대응무역(counter trade)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교역상대방에 대해서 대응구매의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대응구매방식보다는 거래상품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산결제제도는 1931년 스위스와 헝가리 간의 무역에 처음으로 채택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국가간의 무역확대방안으로 비교적 널리 사용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국제금융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시장경제국가간에는 별로 통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주로 사회주의국가간의 무역결제 수단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동구권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코메콘

(CMEA)의 해체 이후에 청산결제제도는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전의 대일 무역에 청산계정방식을 이용한 것이 유일한 사례⁹⁾이며,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에 대해서 거의 청산결제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일부 비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에 대해서도 청산결제방식을 사용하였다.

청산계정을 이용한 대금결제는 환결제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게는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서 북한으로서는 대금결제를 위한 외화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청산결제제도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판매애로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교역시마다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교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남북한 교역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청산계정을 통한 결제로 교역업체의 손실위험이 극소화된다는 장점을 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동서독의 경우와 같은 清算計定 貨越制度(swing facility)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일정한 규모의 신용공여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산결제방식의 주목적인 교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경우 남북한간 반출입규모가 확대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교역증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청산결제방식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

9) 이는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여러 나라와 무역대금 결제에 있어서 청산결제방식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한일간의 청산결제제도는 양국간의 국교정상화에 따라 폐지되고 일반적인 자유무역형태로 전환되었음.

며, 계획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자유 무역 확대추세라는 세계적 환경변화와 북한의 개방지원에 역행한다는 단점도 있다. 아울러 남북한이 남북교역을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거래라고 합의하였으나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쌍무적 결제협약을 체결할 경우 IMF 8조 국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¹⁰⁾

III. 청산결제제도 운용사례

1. 동서독간 청산결제제도

동서독간의 교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군정시기부터 ‘地域間 貿易’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49년 동서독의 민간정부 수립으로 군정이 사실상 종결되고 동서독 정부간에 교역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확립된 후에 ‘內獨交易(Inner-deutscher Handel)’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1990년 경제통합시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동서독 교역의 법적 초석이 된 프랑크푸르트협정(1949. 10)은 동서독간의 거래규모,

물품인도기간, 물품목록, 청산계정과 대금결제방법 등 교역거래실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5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했던 프랑크푸르트협정은 동서독의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쌍무적 무역협정인 제2차 베를린협정¹¹⁾으로 1951년에 대체·체결되었다. 프랑크푸르트협정과 제2차 베를린협정 등 준국제법적인 무역협정의 체결로 동서독 간의 경제교류는 교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동서독간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따르는 대금결제는 프랑크푸르트협정과 제2차 베를린협정에 따라 서독의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과 동독의 동독국가은행(Staatsbank der DDR)에 상호 개설된 청산계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동서독 정부는 제3국을 통한 결제나 교역당사자간 물물교환 및 대차상계 등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여타 결제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으며, 청산계정을 통한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청산통화단위도 양국의 현금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VE (Verrechnungs Einheit : 청산단위)¹²⁾라는 제3의 결제통화단위를 사용하였다.

10) IMF는 쌍무적 결제협약(bilateral payment arrangement)이 쌍무간 무역거래만을 결제하기 위해 쌍무계정(bilateral account)을 설치하거나 쌍무계정상의 대차에 대해서 대표적인 시장금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IMF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적 통화협약이나 복수통화조치를 금지하고 있음(IMF 협정문 제8조).

11) 제2차 베를린협정(1951. 9.)의 정식명칭은 ‘독일 마르크(DM-WEST) 유통지역과 독일발권은행 마르크(DM-EAST) 유통지역 간의 무역에 관한 협정’이며, 동서독은 협정의 당사자를 양국의 통화지역(DM-WEST 및 DM-EAST)으로 표시하여 상호간의 국가인정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독교역이 국가간의 국제무역으로 간주받지 않도록 하였음. 한편 이 협정은 협정서에 첨부된 합의사항(물품목록) 유효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허용하여 청산계정을 통한 장기계약거래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1960년 8월에 개정되었음.

12) VE는 동서독간의 교역에 국한되는 명목상의 결제통화단위로서 단순히 거래의 매개단위일 뿐이며 상품의 등가교환을 보장할 수 없는 성질의 통화단위였음. 그러나 VE의 창출은 동서독간의 무역에 있어서 신속한 거래를 위한 안정된 청산결제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획기적인 거래단위였

<표 1>

內獨交易의 청산계정 대월한도 및 동독의 소진실적

단위 : 백만 VE, %

연 도	대월한도액(A)	동독의 소진실적(B)	소진율(B/A)
1955	100	52	52.0
1958	150	110	73.3
1960	200	104	52.0
1964	200	42	21.0
1970	440	387	88.0
1975	790	711	90.0
1980	850	745	87.6
1985	600	172	28.7
1988	850	265	31.2

자료 : 독일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독일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1990, p.100.

그리고 동서독간 교역대금의 결제는 매년 6월 30일까지 동서독 청산결제은행의 청산 계정상의 채권·채무를 합산한 누적 대차잔 액만을 청산하는 차액청산방식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신용한도액 범위를 허용하는 清算計定 貸越制度(Swing Facility: 스윙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내독거래의 청산결제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독특한 특혜 방식이었다. 청산결제방식은 동서독간 교역량이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점을 다소 저해한 측면도 있었지만, 동서독 간의 심각한 교역수지 불균형을 방지하여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음. 동서독간 교역의 대금결제단위로 VE를 사용하게 된 것은 동서독간의 협상과정에서 서독이 교환성을 이유로 서독의 DM貨를 결제통화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이를 동독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새로운 결제단위로서 VE를 제안한 데 따른 것임. 공식환율은 1DM(서독 마르크)=1VE=1Mark(동독 마르크)가 적용되었으나, 실제로 VE는 서독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서독 마르크와 1:1의 비율로만 환산되었고 동독 마르크와는 1:1의 등가 환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13) 프랑크푸르트협정과 베를린협정에 따라 대월한도액은 양독간의 요청에 의거하여 매 5년 간격으로 변경되도록 되었으며, 차기 대월한도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대월한도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대월한도액은 정액으로 결정되었으나 대략 당시 동독의 대서독 반입규모의 10% 수준에서 결정되었음.

청산계정 대월제도는 프랑크푸르트협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당시에는 청산계정 대월한도를 1,600만 VE 이내로 하고 대월잔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청산할 것을 의무화하였다.¹³⁾ 제2차 베를린협정 이후 1959년까지 청산계정 대월한도는 점차 증가하여 2억 VE까지 확대되었으나, 청산계정 대월제도는 1960년대 말까지 동독의 대서독 교역적자가 지속되면서 동독만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다(서독은 1968년 1회만 사용). 더구나 차액 청산의 경우도 1963년과 1966년 2회를 제외하고는 이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8년 일시적으로 내독교역이 정체되자 서독은 내독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동

독과의 합의를 통해 종래에 일정금액으로 고정되었던 청산계정 대월한도를 교역신장에 연동하여 자동증감이 되도록 제도화하였다.¹⁴⁾ 청산계정 대월제도는 1975년에 동서독이 청산계정 대월잔액의 정기적 청산의무도 폐지 키로 합의함에 따라 서독의 동독에 대한 일종의 현금차관으로 공여되는 공급자신용의 형태로 운용되는 영구대출제도로 변형되었다.¹⁵⁾ 즉, 청산계정 대월제도는 상품의 교역에 의해서 차관공여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한편 동독의 청산계정 대월한도액 소진실적은 연도별로는 기복이 있으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략 대월한도액의 약 50~70% 수준이었으며, 많은 경우에는 80~90%를 소진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소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독의 청산결제은행은 청산계정을 교역상품별로 개설하고 결제의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세부계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상품과 용역의 결제를 위하여 서독의 연방은행과 동독의 국가은행에 부속계정(Sub-Account) (1), (2), (3)을 설치하여 일반상품의 반출입에는 부속계정 (1)과 (2)를 이용하며 용역거

래에는 부속계정 (3)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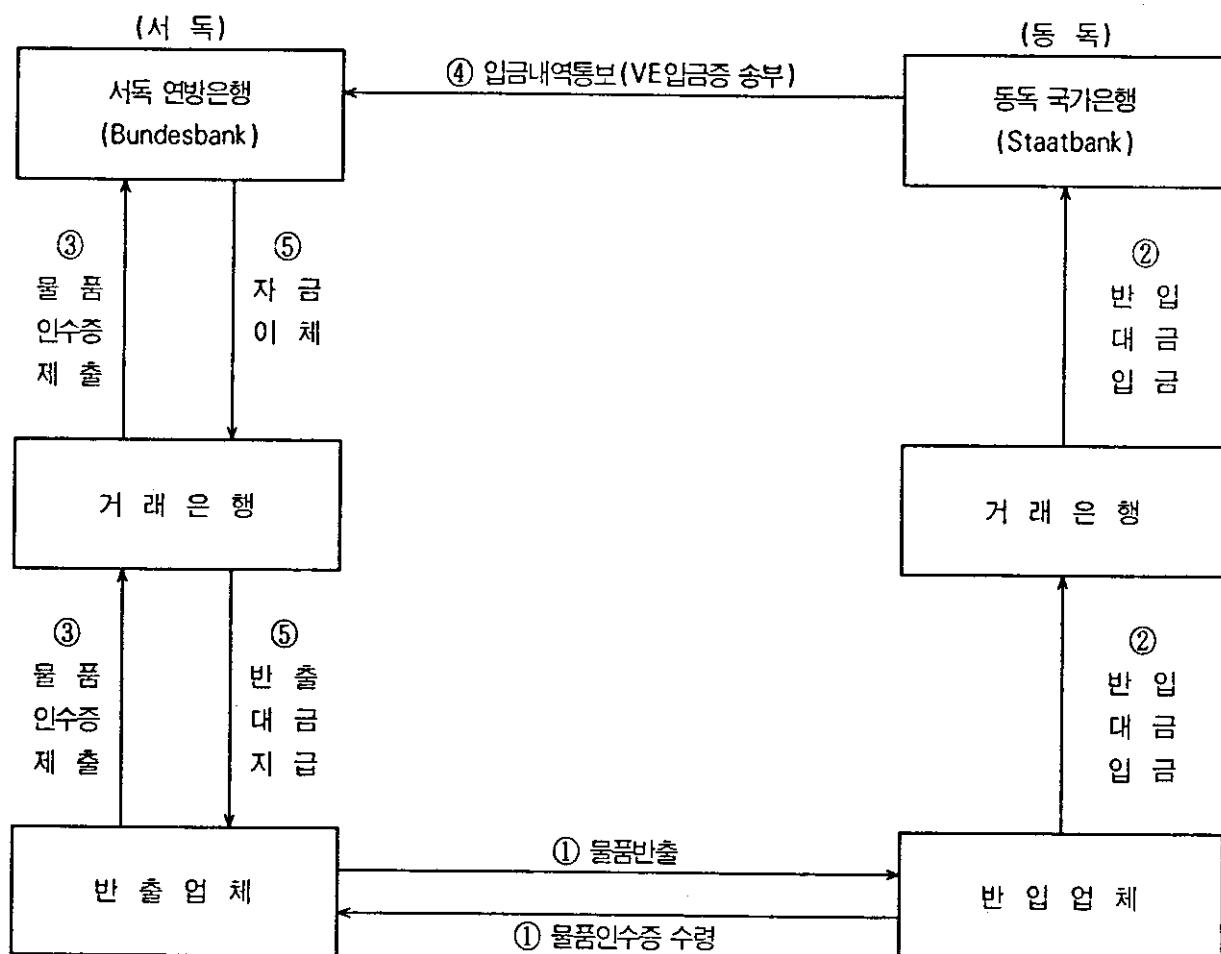
상품대금 결제를 위한 2개의 부속계정 중에서 부속계정 (1)은 硬性商品¹⁶⁾의 결제를 위한 것으로 경성상품의 대부분은 매년 수량과 금액 등이 고시되어 거래범위가 제한되는 쿼터품목이었다. 부속계정 (2)는 부속계정 (1)에 속하지 않는 모든 상품의 결제에 사용되었는데 이들 품목은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軟性商品, 즉 자유교역상품이었다. 부속계정 (3)은 상품의 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로서 물자의 운송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결제에 이용하였다.¹⁷⁾ 한편 동독국가은행은 1957년에 3개의 부속계정 외에 특별계정인 S계정을 서독연방은행에 개설하였는데, 이는 청산계정 대월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시적인 반출입의 중단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동독은 청산계정 대월한도에 도달할 경우 초과금액을 특별계정인 S계정으로 이월시켜 반출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상품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신상품과 긴급필요물자의 구입시에도 사용하였다.

동서독간의 교역 및 청산결제절차를 보면 서독상품의 대동독 반출의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그림 2> 참조).

- 14) 동독이 사용할 수 있는 매년도의 청산계정 대월한도는 전년도말 청산계정에 기재된 동독의 대서독 반입총액의 25%로 설정되었음. 그러나 청산계정 대월잔액의 정기적 청산의무도 1976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동서독은 적자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월한도 자동증감제도는 존속시키되 대월한도의 상한을 설정하고 대월규모의 점진적 축소에도 합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대월한도는 1976~82년에는 8억 5,000 VE, 1983년에는 7억 7,000 VE, 1984년에는 6억 9,000 VE, 1985년에는 6억 VE로 축소되었으나, 1986~90년에는 8억 5,000 VE로 다소 증액 조정되어 운용되었음.
- 15) Deutsche Bundesbank, Intra-German Trade and Payments, 1988. 11.
- 16) 부속계정 (1)을 통한 결제대상품목은 동독공급상품으로는 광산품, 석유류제품, 임산물, 기계류 및 원유 등이며, 서독공급상품으로는 철강, 비철금속, 광산품,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등이었음.
- 17) 주요대상은 화물운송비, 운반비, 화물환적비용, 항구사용료, 창고보관비, 장치비, 소송비용, 박람회전시비, 운송보험료, 금융부대비용, 은행이자, 법률자문비용, 면허취득비, 중개비용, 대리인·대리점비용, 법적·계약상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지불금, 상표권 사용비, 특허사용비, 관세업무처리비 등이었음.

<그림 2>

청산계정에 의한 대금결제절차(서독의 대동독 반출의 경우)



- ① 서독의 반출업체는 동독의 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동독의 반입업체로부터 물품인수증을 수령
- ② 동독의 반입업체는 반입대금을 거래은행을 통해 동독의 청산결제은행인 동독국가은행에 입금
- ③ 서독의 반출업체는 물품인수증을 거래은행을 통해 서독의 청산결제은행인 서독연방은행에 제출
- ④ 동독국가은행은 입금된 상품대금을 자체 내에 개설된 서독연방은행 계정에 기재하고 VE입금증을 서독연방은행에 송부함으로써 반입대금 입금내역을 통보

- ⑤ 서독연방은행은 VE입금증에 의거하여 상품대금을 자체 내에 개설된 동독국가은행 계정에 기재하고 물품인수증과 확인한 후 반출대금을 거래은행을 통해 서독 반출업체에 지급

2. 북한의 청산결제제도

북한은 전통적으로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코메콘의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은 청산결제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코메콘체제의 교역형태를 따랐

었다. 대체로 북한의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은 교역상대국과 무역에 대한 쌍무적 기본조약의 체결과 이를 바탕으로 매 5년마다¹⁸⁾ 체결되는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역협정을 근거로 매년 무역의정서를 체결하여 당해연도의 거래품목,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만 교역규모가 작은 나라와는 주기적이고 정례화된 방법을 거치지 않고 청산협정을 체결하거나 이전의 협정을 갱신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비사회주의국가와도 청산결제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1970년대 후반 비동맹국가와의 교역확대를 위하여¹⁹⁾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의 교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청산결제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결제만을 하였으며, 여타 방식에 의한 교역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청산결제의 대상은 모든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상품교역과 관련된 용역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차관과 같은 자본거래나 교역과 관련 없는 송금 등은 별도의 거래방식을 선택하거나 청산계정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기도 하였다. 북한과 자본거래관계를 가졌던 나라는 주로 구소련이었으며, 구소련과의 자본거래는 상품교역용 청산계정과는 구분하여 구소련 대외

무역은행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실행하였다. 또한 구소련 이외의 국가와의 비상업적 거래에 대해서는 주로 외화송금방식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무역협정에서는 교역대상물품과 대략적인 교역규모도 정하고 있었으며, 교역규모가 크고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년 체결되는 무역의정서에 교역품목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가격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사용하였으나 명시적 이든 묵시적이든 최혜국대우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북한의 청산결제은행은 조선중앙은행(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또는 조선무역은행(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지정되었다. 조선무역은행이 설립된 것은 1959년 11월이며²⁰⁾ 그 이전에는 조선중앙은행이 북한의 유일한 청산결제은행이었다. 조선무역은행 설립 이후에는 조선무역은행이 주로 청산결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청산결제은행에 따라 조선중앙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교역상대국인 구소련과는 양국의 대외결제전담은행인 구소련의 대외무역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되

18) 무역협정을 5년마다 체결하는 이유는 코메콘에 가입한 사회주의국가들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경제계획에 수출입을 통한 물품의 수요공급계획을 반영하기 위함이었음.

19)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와 중소분쟁의 여파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줄어들게 되자 서방국가와의 교역확대 및 자본·기술의 도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수출증대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자본·기술 도입은 무역적자를 누증시켰고 나아가 무역대금 지급불능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음.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1975년 비동맹회의 가입을 계기로 비동맹국가와의 교역확대를 시도하였음.

20) 북한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국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내각결정 제42호(은행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59. 5. 30)를 통해 이들 국가와의 국제결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을 설립하였음.

어 청산결제업무를 담당하였다.

청산결제통화는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일 경우에는 대부분 루블화를 사용하였으며,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결제통화는 硬貨를 사용하였으나, 미국 달러화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영국의 파운드화나 독일의 마르크화를 결제통화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기밀잔액 청산방식의 경우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다음해에 상품의 반출입을 조정함으로써 물자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대표적인 교역상대국인 구소련과의 교역에서는 다음해 4개월 내에 필요한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구소련과 북한과의 교역은 일종의 경제지원의 형태였기에 기밀청산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누적 부채로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한편 비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통상 3개월) 대차차액만큼의 물자를 추가로 반출하여 청산하였으며, 일정기간 내에 물자로 대차가 청산되지 않을 경우 청산차액은 경화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청산계정 대월한도의 경우 사회주의국가와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1년 단위로 하는 청산시점에서 잔액이 상계되는 지만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대월한도액을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대월한도액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한도액은 대월한도에 대한 이자율 적용여부를 염두

에 두고 교역금액에 비례하여 결정하였다. 즉, 대월한도가 클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며, 대월한도가 작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되었다. 다만 어느 경우든지 대월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시장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IV.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운영방안

1.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추진경위

남북한간 교역에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이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984~85년에 걸쳐 개최되었던 남북경제회담에서였다. 당시에는 사회주의국가간의 교역에 청산결제제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북한도 오랫동안 청산결제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서 이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경제체제인 북한이 청산결제제도를 이용할 경우 공급상품의 종류나 규모 등이 정해져 계획경제의 특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역을 위하여 외화를 보유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우리정부도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청산결제제도의 이용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²¹⁾ 그러나 남북경제회담의 결렬로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남북한간의 교역에 대한 협의는 1990~

21) 당시 경제회담에서 북한은 청산결제를 기본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나라는 청산결제방식으로 하되 청산협정 체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제3국은 행발행 신용장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을 주장하였음.

92년에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다시 제기되어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서 직교역 추진에 대해 남북한이 합의하였으며,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는 물자교역의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로 경제공동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결제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남북한이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를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인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청산계정의 범위와 결산, 대월제도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2.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운영방안

가. 당국간 협정의 체결

청산결제방식을 통한 교역추진시 교역당사국은 우선 양국간 무역에 대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다시 매 5년마다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도 무역의정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동서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대신 제2차 베를린협정에서 교역에 대한 제도의 설정과 운용방식을 규정하였으며, 교역대상상품은 제2차 베를린협정의 부속의정서 형태로 매년 작성, 교환되어 왔다.

남북한과 동서독간의 상호관계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간의 청산결제방식의 교역

을 위해서는 동서독과 같이 무역협정체결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여건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남북한 모두가 中期 무역계획을 수립하여 교역을 실행한다는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추진을 위해서 남북한 당국간에는 우선 교역의 제도적 장치와 교역원칙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청산은행간 청산결제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면 당해연도에 교역대상품목 및 수량 등을 개략적으로 정한 교역의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나. 청산결제은행의 지정

북한의 청산결제은행으로는 북한의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대외금융전문은행인 조선무역은행 중에서 하나의 은행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은행체계는 조선중앙은행을 중추로 하는 단일은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전문화원칙에 따라 크게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대내금융사업과 대외금융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²²⁾ 북한에서는 조선무역은행이 정부간 체결된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은행간의 지불협정의 체결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²³⁾ 원칙적으로는 조선무역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의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은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일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일간의 청산결제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제

22) 박유환,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방안, 1997, p. 55.

23)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경제사전」, 1995, p. 937.

적 금융거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어 청 산결제은행으로서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²⁴⁾

한국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당좌예치금계정을 보유하고 있어 시중은행을 활용하여 남북교역 대금을 지급토록 할 수 있으며, 정부재정(남북협력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청산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발권력에 의존하여 청 산계정 대월금액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발권력에 의해 청산계정을 운용할 경우 통화증발이 우려되며, 청산계정 대월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처리할 경우 업무가 번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어 기존업무와 연계·운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청산결제은행의 지정은 상호주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청산결제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정부의 대북한 자금지원 및 결제창구의 일원화, 남북협력기금과의 연계성, IMF 8조국 의무 준수, 과거 사회주의 국가 등 북방거래 지원업무의 경험, 고유 업무의 특성 및 지원업무와의 연계성 등 업무수행 제반여건과 북한의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을 감안하여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 청산결제통화와 상품가격의 결정

청산결제통화의 지정에 있어서는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화폐단위(청산단위)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과 국제적인 교환성을 지닌 통화를 결제통화(硬貨)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동서독간의 청산결제에 사용한 VE라는 청산결제단위는 서독의 마르크화와 동가의 관계에 있었으며, 교역상품 가격도 서독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였기에 실질적으로는 서독의 마르크화를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북한간의 교류물자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바 있어²⁵⁾ 제3의 통화단위를 창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화폐단위를 창출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등 특정 국제통화, 혹은 복수통화에 연동되어야 하기에 제도자체만 번잡하고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84년 남북경제회담 당시부터 결제통화에서는 남북한이 의견을 보아 온 것이 사실인데, 북한은 정치적 이유로 미국 달러화의 결제통화 지정을 회피하였으며 결국은 중립국인 스위스 프랑화로 의견접근을 본 바 있다. 그러나 결제통화는 가능하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안정성을 지닌 통화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통화의 경우에도 안정성이 부족한 통화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의 문제로 남북한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24) 일반 외국환은행은 특정은행을 선정하기가 어렵고, 타 은행과의 협조체계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보여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지정은 어려울 것임.

25)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 제⑥항.

〈표 2〉

교역형태별 청산계정 구조(안)

계정구분	거래내용	비고
기본계정	부속계정(상품계정, 용역계정)을 총괄	
	상품계정 남북한간 물자교역거래	필요시 주요품목계정과 일반품목계정으로 구분 운용
용역계정	물자교역과 관련된 용역거래	
자본계정	청산계정 대월자금 공여	

때문이다. 북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한간의 교역대금결제도 대부분 미국 달러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신축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져 미국 달러화를 결제통화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 청산계정 구조

청산계정의 설치는 교역형태별로 설치하여 운용하되 물자교역거래와 물자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계정 및 용역계정을 부속계정으로 하는 기본계정, 청산계정 대월자금 공여 등을 위한 자본계정을 상대국 청산결제은행에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계정에는 남북한간 합의한 교역의정서상의 품목거래를 대상으로 하되, 상품계정을 주요품목과 일반품목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품 1계정, 상품 2계정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면 될 것이다. 용역계정에는 상품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임대료, 창고료, 운송비, 항만운송비, 통관비용, 수수료, 광고비 등 용역거래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본계정은 청산계정 기밀대차 정산시 교역상대국에게 대월되는 금액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설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청산계정의 결산

청산결제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외화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교역당사자간의 최대한의 교역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지속적인 교역조정과정을 거쳐 교역불균형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역균형 유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밀의 대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차액결제의 방법은 크게 결제통화로 결제하는 방법과 추가적인 상품공급을 통해 정산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의 남북교역구조는 남한의 반입초과로 나타나고 있으나(KEDO 지원 중유, 경수로 물자, 인도적 무상지원물자 등의 반출 제외), 이는 북한의 반입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반출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반입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북한의 외화부족을 고려할 때 다음해에 상품의 추가공급으로 정산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선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당국이 교역균형유지를 노력할 경우 기밀청산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제통화로 차액정산을 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추가적인 상품공급을 통한 정산의 경우 단기간 내 상품공급이 어려워져 최종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말대차는 결제통화로 익년도의 1/4분기(3개월)를 정산기간으로 정하여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바. 청산결제를 통한 대금결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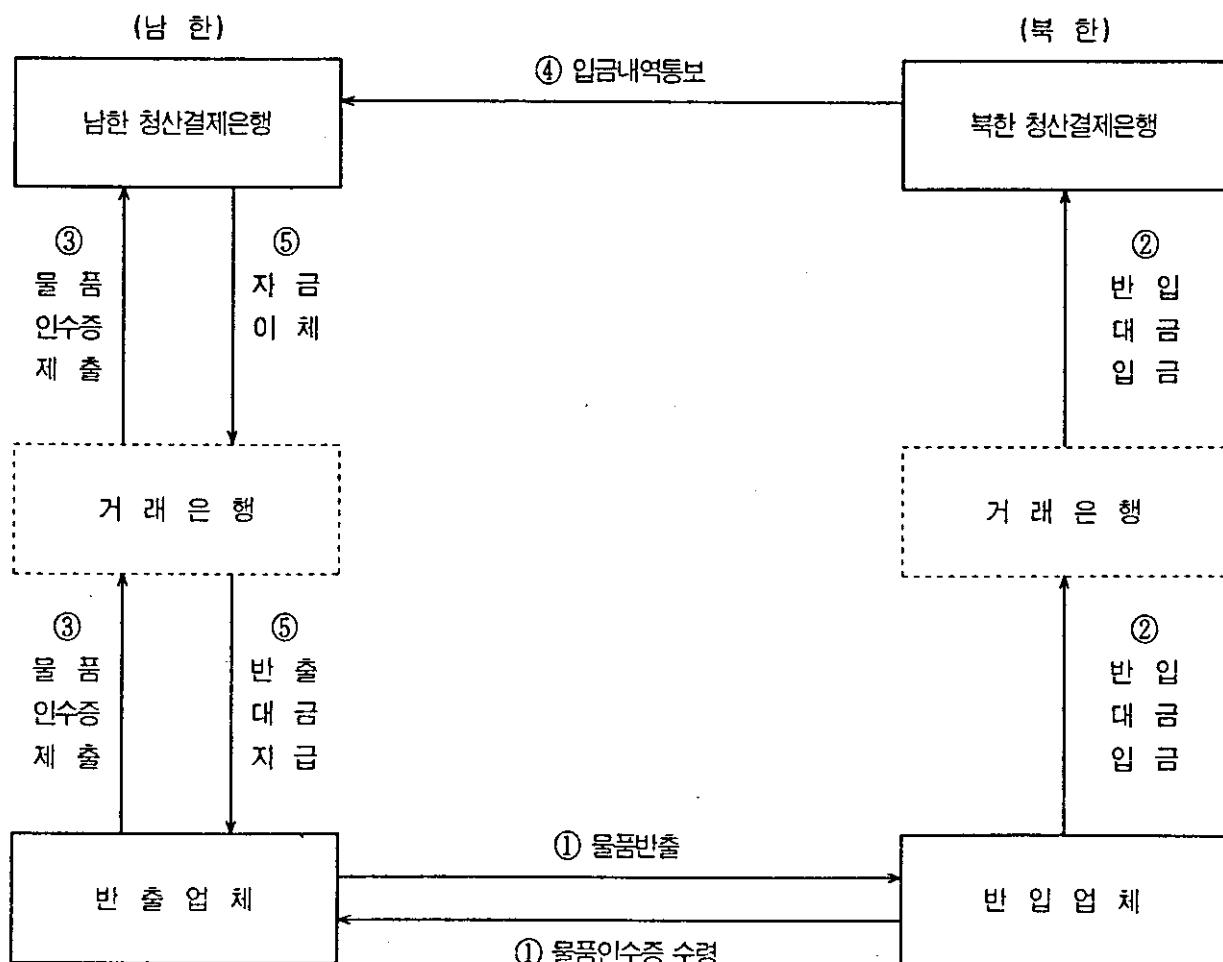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남북한간의 상품교역 절차는 동서독간의 교역절차를 준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절차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의 반출업체는 북한의 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북한의 반입업체로부터 물품인수증을 수령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남한의 청산결제은행에 제출하고, 북한의 반입업체는 거래은행을 통해 북한의 청산결제은행에 반입대금을 입금시킨다. 북한의 청산결제은행은 남한의 청산결제은행 계정에 기재하고 남한의 청산결제은행에 반입대금 입금내역을 통보한다. 남한 청산결제은행은 상품대금을 자체 내에 개설된 북한 청산결제은행 계정에 기재하고 물품인수증과 확인한 후 반출대금을 남한의 반출업

<그림 3>

남한의 대북한 반출의 경우 청산계정에 의한 대금결제절차(안)



체에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한다.

이 경우 남한의 반출입업체가 청산결제은행에 반출입대금을 납입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일반 시중은행을 경유하는 방안과 직접 청산결제은행에 청구나 납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어느 방안 모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시중은행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청산결제은행과 시중은행과의 자금이체를 위한 업무협약만 체결되면 될 것이다.

사. 청산결제 대월한도

남북한간의 교역에 청산결제제도를 운용할 경우 청산계정 대월한도제의 도입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지금까지의 남북교역 경험으로 볼 때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청산결제 운용 사례를 볼 때 대월한도액은 주로 교역규모에 따라 달랐었는데 대월한도액이 낮은 경우는 교역의 규모가 적거나 교역이 정례화되지 않은 경우이며, 대월한도가 가장 높았던 동서독의 경우 동독의 대서독 반입규모의 10%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대월제도가 신용차관의 형태로 바뀌면서 한도액이 25%로 확대된 바 있다.

남북한간 교역에 있어서 대월한도를 높게 책정하면 교역을 다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의 반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말대차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청산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청산계정 대월한도의 설정은 남북한간 경제규모와 반출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월한도는 청산결제 시행초기에는 교역규모의 10% 정도에서 결정하고, 교

역규모 확대 추이와 이산가족 상봉, 주민왕래수준, 문화교류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역규모에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대월금액에 대한 이자부담은 초기에는 무이자로 하는 것이 남북한간 결제편의 및 교류촉진을 위해 청산결제방식을 채택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외환사정이 어느 정도 호전될 경우에는 남북교역은 상업성에 따라 추진하며 반출입 불균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금리에 연동하는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일정수준의 저금리로 고정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월제도를 동서독의 경우에서처럼 신용차관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 이는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남북한간의 교역불균형 심화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교역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대월제도 도입시 필요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미결제채권 인수자금을 이용하여 확보하면 될 것이다.²⁶⁾

3.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운영시 고려사항

가. 환결제방식을 통한 교역의 허용여부

남북한간의 교역이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직교역으로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선적으로 대금결제방식의 운용 즉, 환결제방식과 청산결제방식을 어떻게 운영하는

26) 남북협력기금법(제8조),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제8조),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제61조)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계좌의 미결제채권을 인수할 수 있음.

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남북교역에 대해서 환결제방식과 청산결제방식을 혼용하여 운영할 경우 북한이 이를 악용한다면²⁷⁾ 청산결제 방식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금융거래를 청산계정을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무역 대금결제 이외에 위탁가공대금 및 투자자금 등의 송금은 환결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교역전환 초기단계에서 남북한간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남북한간의 직교역을 정착시키고 남북교역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서 환결제방식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청산계정을 통한 결제가 어려운 특수형태의 교역에 대해서는 환결제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반출입에 있어서도 대금결제방법의 선택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²⁸⁾

나. 교역균형 유지 및 상품공급 의무 부과 여부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교역의 일반적인 원칙중의 하나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반입

에 상응하는 규모를 반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교역이 어도 반드시 상품공급의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니며, 이는 동서독간의 교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교역에 있어서도 매년 체결하는 무역의정서상의 상품교환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설정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공급 의무화가 남북한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상품공급 의무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간의 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무역의정서에 포함될 교역상품의 수량과 가격은 교역 가능품목의 열거 및 공급 가능물량, 그리고 총교역액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교역균형 유지를 위하여 남북한은 빈번한 접촉을 통해 대규모의 교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평소에 빈번한 교역의 조정과정이 생략될 경우 기말에 대규모의 대차가 발생하여 청산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우 교역관리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조직하거나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 27) 외화가 부족한 북한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물품의 반출에 대해서는 가능한 환결제방식을 희망할 것이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물품의 반출과 대부분의 반입은 청산결제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청산계정설치의 의미는 없어지고 결제방식 수가 늘어나 제도만 복잡해지고 관리비용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28) 직교역이 허용되고 추진되는 상황에서의 간접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일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간접교역에 대한 무관세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유인하는 하나의 경제적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여짐.

〈참 고 문 헌〉

1. 고일동, 「남북한 청산결제제도의 운용방안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4.
2. 국토통일원, 「동·서독간의 통행·통신·통상에 관한 연구」, 1990.
3. 김규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완화와 남북한 관계」, 민족통일연구원, 1996.
4. 독일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독일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1990.
5. 박유환,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 1997.
6. _____, “분단국가의 금융협력이 남북한 금융협력에 주는 시사점 – 동서독 및 중국·대만의 금융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수은조사월보」, 1997. 12.
7. 배종렬, “남북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영방향에 대한 시론적 일고찰,” 「수은조사월보」, 1995. 7.
8. 이태욱·연하청·고일동, “경협을 통한 남북한관계 발전의 길,” 오름, 1996.
9. 장화수, 「분단국의 경제교류」, 혜화출판사, 1989.
10. 재무부 국제금융국, 「동·서독 경제교류」, 1989. 4.
11. _____, 「독일통일관련자료집」(I), (II), (III), 1991. 9.
12. 윤기관,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금결제상의 새로운 노력,” 「통일경제」, 1997. 10.
13. 최수영, “남북한 교역관계,”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10주년 기념세미나」, 1998. 11.
14.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각호.
15.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5.
16.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한간 청산계정 설치 운용방안」, 1992. 6.
17. _____, 「남북한 청산결제제도 운영시뮬레이션」, 1993. 4.
18. _____, 「통독전 동·서독간 교역제도」, 1992. 8.
19. 한국은행, 「동·서독간 무역 및 결제제도」, 1990.
20.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경제사전」, 1995.
21. Deutsche Bundesbank, Intra-German Trade and Payments, 1988. 11.